

#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102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03월 03일  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·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, 단체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조정하고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지원 사업과 행·재정적 지원과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조례의 적용대상을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·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, 단체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조정함(안 제3조).
- 시장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행할 수 있는

사업을 명시하고, 행·재정적 지원 근거와 민간위탁 근거를 신설함  
(안 제9조 신설).

- 안 제9조의 신설에 따라 조문번호와 인용조문을 수정함(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),

#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 중 “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” 를 “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·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, 단체 등에게” 로 한다.

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로 하고,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
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
3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
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등 필요물품 지원
5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6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한 교육, 상담,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
7.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안 제12조제1항 중 “제10조” 를 “제11조” 로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, 민간기업, 협회 또는 단체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·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, 단체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</p> <p>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</li> <li>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</li> <li>3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</li> <li>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등 필요물품 지원</li> <li>5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</li> <li>6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한 교육, 상담,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</li> <li>7.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/ol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 ~ 제10조 (생략)</p>	<p>제10조 ~ 제11조 (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p>
<p>제11조(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제10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</p>	<p>제12조(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----- 제11조-----</p>

조 례 안	수 정 안
<p>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2조 ~ 제13조 (생략)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② (조례안과 같음)</p> <p>제13조 ~ 제14조 (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포용적인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특수형태근로종사자”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으로,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또는 위탁·위임 등의 계약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협회, 단체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「근로기준법」 등에 명시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.

제6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,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업종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
3.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
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
5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·제도 개선사항
6.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, 전문가, 기업, 관련 단체나 협회,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7조(시행계획)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.

제8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, 보수, 계약조건, 피해 등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지원사업 등)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 조성
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
3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
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안전장구 등 필요물품 지원
5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,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
6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한 교육, 상담,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
7.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

위탁할 수 있다.

제10조(권익보호지침 등)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지침(이하 “권익보호지침”이라 한다)을 개발하여 보급·적용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와 공사·공단 및 출연·출자기관(이하 “산하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권익보호지침 등을 따르도록 하고, 서울특별시 구청장 또는 기업·기관·협회 등의 장에게 권익보호지침 등의 준수·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민간기업·기관·협회 등으로 하여금 권익보호지침 등을 따르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④ 권익보호지침 등을 개발·보급·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권익보호 지원센터)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부당 계약, 보수 지연지급 등 피해 예방 및 구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법률·세무·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
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
3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
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 설립 및 육성 지원
5. 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

제12조(지원센터 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제11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

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기관·단체 지원) ① 시장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·기관에 한한다.

1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관리 지원
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·훈련
3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
4.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피해 사례 조사 및 보호를 위한 캠페인
5.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
6. 그 밖에 시장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